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91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의견	2
2. 내용별 검토의견	6
1) ‘보고’를 ‘통보’로 수정	6
2) 기존 시행령 위임 사항을 시·도 조례 위임 사항으로 변경	16
3)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19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자체장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통보’로 수정하고, ②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견청취 절차 등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및 자치입법권 강화라는 정부 국정과제¹⁾의 세부 실천 과제로²⁾,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법률³⁾이 개정 대상임⁴⁾.

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11번(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2) 법제처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 부처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거쳤음(23.7.21.~23.8.31.)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악취방지법」, 「빛공해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잔류성물질법」, 「석면안전관리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4) 참고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음.

[일괄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명	현행	개정안
가축분뇨법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을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환경부장관 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또는 제출)'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및 배출허용기준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먹는물관리법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및 방법, 샘물보전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수도법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변경,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대책 및 관리실태를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실내 라돈조사결과, 라돈관리계획의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악취방지법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사항, 배출허용기준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빛공해방지법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사항, 빛방사허용기준, 빛공해환경영향평가결과를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조사 계획 및 결과를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잔류성유기물질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사항, 대책 계획 시행결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계획 및 결과, 관리계획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지자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은 법률로 정함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지하수법	지하수 이용실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사항, 지하수 변동실태 조사결과, 특별회계 운용계획, 영업실적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또는 제출)'하도록 함
	시·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함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권한, 책임, 사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⁵⁾, 관할 지역의 주민생활 및 복지 등과 관련된 자치사무에 대하여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⁶⁾,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법령 등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도·감독할⁷⁾ 수 있음⁸⁾.

한편, 일부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가의 사전 승인·협의 및 국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성격의 사무에 대해서도 법령으로 조례 제정권을 제한하고 사무 수행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실질적

5)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6)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이하 생략)

7) 참고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은 위임사무에 대하여만 이루어짐.

「지방자치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8) 참고로, 2022.5.1. “2022년 법령상 사무총조사” 결과 총 사무 77,242개 중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포함)는 49,046개(63.5%)이고, 자치사무는 28,196개(36.5%)임.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조례는 104,122건, 규칙은 26,832건임.

보장에 한계가 있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고’ 의무를 ‘통보’ 의무로 정비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시 주민의견청취제도의 세부사항에 관한 시행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먼저, ‘보고’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 결과 등을 알린다는 의미고, ‘통보’는 상호 대등한 지위의 상대방에게 업무 결과 등을 알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자체가 국가와 협력적인 관계로서 수행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대상 법률 중 「수도법」의 경우, 수돗물 공급과 관련된 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국가의 지도·감독이 요구되는바,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통보받은 사항에⁹⁾ 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자체의 행정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함.

9) 마을상수도 관리실태(수도법 제47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실태(수도법 제55조)

2. 내용별 검토의견

1) ‘보고’를 ‘통보’로 수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된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대상 법률명	현행	개정 내용
가축분뇨법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제7조),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제44조)을 지자체장이 중앙행정기관장(환경부장관 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또는 제출)’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제3조) 및 배출허용기준(제16조)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먹는물관리법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제5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대상 및 방법(제8조), 샘물보전구역 지정 및 변경사항(제8조의3)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수도법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의 수립·변경(제30조), 마을 상수도 오염방지대책 및 관리실태(제47조), 소규모급수시설 오염방지대책 및 관리실태(제55조)를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제9조), 실내라돈조사결과(제11조의7), 라돈관리계획의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제11조의9),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제13조)를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악취방지법	악취실태조사 결과(제4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사항(제6조), 배출허용기준(제7조)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사항(제9조), 빛방사허용기준(제11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결과(제16조)를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조사 계획 및 결과(제30조)를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개정대상 법률명	현행	개정 내용
잔류성물질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현황(제29조의2)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사항, 대책계획 시행결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석면안전관리법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계획 및 결과(제13조), 관리계획(제15조)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지하수법	지하수 이용실태(제5조),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제9조의2),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사항(제12조), 지하수 변동실태조사결과(제1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제30조의2), 영업실적을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가축분뇨실태 조사의 결과,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환경부장관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은 전국 단위 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자체가 정부에 협력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보고’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업무 결과 등을 알린다는 의미인 점, ‘통보’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결과 등을 알린다는 의미임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보고’를 ‘통보’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제8조제4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는 ‘통보’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므로 문구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대상 법률안 조문대비표 예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u>통보</u> -----.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보고</u> 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u>시장·군수·구청장</u> 으로 하여금 가축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제출) ① ----- ----- ----- ----- ----- ----- <u>제출</u> -----. ----- <u>해당 실적을 제출받은</u> ----- ----- ----- ② ----- ----- ----- <u>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가축분뇨 업무

현행	개정안
<u>분노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u> <u>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u>	<u>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의 제</u> <u>출을 요구할 수 있다.</u>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 ⑤ (생략)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 ----- ----- ----- <u>통보</u> ----- ----- ----- -----.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 ④ (생략)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 ----- ----- <u>통보</u> ----- ----- -----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⑥ ----- ----- ----- ----- <u>통보</u>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①

현행	개정안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 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통보</u> ----- ----- ----- -----. ⑤ (현행과 같음)

[수도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통보</u> -----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마을상수도) ①·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7조(마을상수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통보</u> ----- --. <u>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 ④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 ~ ④

현행	개정안
(생략)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 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 ----- ----- ----- ----- ----- ----- 통보----- -----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생략)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u>보고</u>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군수·구청장이 <u>보고</u> 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한다.	② ----- ----- ----- ----- ----- ----- ----- 통 <u>보</u> ----- ----- ----- 통 <u>보</u> ----- ----- <u>통보</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 ⑥ (생략)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⑦ ----- ----- ----- -----

현행	개정안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u>보고</u>)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u>보고</u>)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현황 2.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 결과 3.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사 결과의 내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u>보고</u>하여야 한다.	----- ----- ----- <u>통보</u>----- -----.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u>통보</u>) ----- ----- ----- -- <u>통보</u>-----.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u>제출</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출</u>----- -----.

2) 기존 시행령 위임 사항을 시·도 조례 위임 사항으로 변경

「석면안전관리법」 및 「지하수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미지정 지역의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조례로 정할 때 대통령령상 기준에¹⁰⁾ 따르도록 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대상 법률명	현행	개정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음(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함
지하수법	시·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함(제1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함

- 10) 「지하수법 시행령」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변경 시 시·도지사의 주민 의견 청취,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조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조치명령 등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자체의 행정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¹⁾.

[지하수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u>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u>

11) 참고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지역 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하수법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조례는 현재 부산광역시 등 6개 시·도에서 규정하고 있음.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3. ----- -- <u>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3)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에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략)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u>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u>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¹²⁾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1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반입수수료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7.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순환경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순환이용 장려를 위한 홍보·교육,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587억원)¹³⁾, 목포시(2,000만원)¹⁴⁾ 등 일부 지자체가 순환경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에 추가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를 전환을 앞당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경기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587억원 규모의 순환경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 %)

합 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예탁금회수수입 등 기타
58,687 (100)	14,046 (23.9)	40,855 (69.6)	3,786 (6.5)

주) 2024년 예상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금액(약 15,607백만원)의 100분의 90을 환경부에서 교부
자료: 경기도

14) 목포시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2,000만원)을 재원으로 순환경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47